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44,668,324	22,340,050
일반회계	645,793,429	19,373,803
특별회계	98,874,895	2,966,247
공기업특별회계	74,782,935	2,243,488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0,555,326	916,660
하수도사업특별회계	44,227,609	1,326,828
기타특별회계	24,091,960	722,759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421,024	42,631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3,051,263	91,538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517,730	15,532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6,374,306	491,229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,895,637	56,869
지하수특별회계	832,000	24,96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727,64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